

# 업 무 협 약 서

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(이하 “서울보증”이라 한다)는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센터와 서울보증이 상호 연계하여 채무조정외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센터와 서울보증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운영
2. 센터와 서울보증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, 협력분야 개발
3. 그 밖에 상호 협의한 사항

제3조(협약의 이행) 센터와 서울보증은 상호 신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효력 발생과 갱신)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문서로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의 내용은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권리의무의 승계) 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7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센터와 서울보증은 각 기관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상호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보관)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.

2018년 12월 14일



센터장 박정만

박정만



대표이사 김상택

김상택